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8
----------	------

제출일자 : 2024

제출자 : 달성군



## 1. 개정이유

체험료 감면에 관한 사항 및 체험료 반환기준을 조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체험료 반환 기한 규정(안 제7조)

나. 체험료 감면대상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개정(안 별표1)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9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4. 10. 4.~10. 24.)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 치유의 숲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제3항 중 “반환한다”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한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체험료
일반	10,000원
달성군민	8,000원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	
비슬산유스호스텔, 비슬산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사람	6,000원

1.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2. 단체란 10인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3.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달성군민 체험료는 본인에 한하며, 일행이 달성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달성군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5.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7.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

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를 말한다.

8. 비슬산유스호스텔 등에 숙박하는 사람에 대한 체험료는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9.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0. 체험료 감면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11.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체험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12. 협약 체결 기관·단체란 비슬산 치유의 숲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u>반환</u>한다.</p>	<p>제7조(예약 및 체험료의 납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금액을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u>사유</u>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u>반환</u>한다.</p>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6조제1항 관련)

대상자	체험료		비고
	개인	단체	
일반	10,000원	8,000원	* 비 고 1. -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인 10인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달성군민 체험료는 본인에 한하며, 일행이 달성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달성군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5·18 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를 말한다. - 아젤리아 호텔 등에 숙박하는 자에 대한 체험료는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달성군민	8,000원	-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아젤리아 호텔, 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자	6,000원	-	* 비 고 2.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대상자	체험료
일반	10,000원
달성군민	8,000원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단체	6,000원
비슬산유스호텔, 비슬산자연휴양림, 비슬산 오토캠핑장에 숙박하는 사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신 설>	2. 단체란 10인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4. 달성군민 체험료는 본인에 한하며, 일행이 달성군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달성군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5.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신 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신 설>	7.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

현 행	개 정 안
	<p>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를 말한다.</p>
<신 설>	8. 비슬산유스호스텔 등에 숙박하는
	<p>사람에 대한 체험료는 그 시설의 숙박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p>
<신 설>	9.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p>10. 체험료 감면은 중복적용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p>
<신 설>	11.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체험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p>12. 협약 체결 기관·단체란 비슬산치유의 숲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p>
<신 설>	
<신 설>	
<신 설>	

## 관 계 법 령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

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